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30.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3월 16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3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3.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하천보전활동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전임.
- 본 조례안은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11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도림천, 안양천, 대방천의 하천공간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하천 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하천의 이용자인 구민의 책무 또한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하천 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하천보전활동 협력과 협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최근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국내외에서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 우리 구에게 도림천, 안양천, 대방천 등의 하천 공간은 녹지대로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이자 구민들의 쉼터인 하천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 하천이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보전에 대한 구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변 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미래세대 또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하천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당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
----------	-----

발의연월일: 2023년 3월

발 의 자: 유승용, 양송이, 최인순
김지연 의원(4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하천보전활동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천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3. 14. ~ 2023. 3. 20):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들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 공간”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하천구역의 공간으로서 제방부지와 제외지 공간을 포함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연환경·시설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여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련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하천 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

민”이라 한다)과 자연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2. 하천 공간의 자연생태계를 보전·보호 또는 복원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공생·공영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해야 한다.

3. 하천 공간의 모든 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공익에 적합하고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가 돼야 한다.

4. 하천 공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5. 하천공간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구 행정관할에 속하는 하천(도림천, 안양천, 대방천)들의 하천 공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 공간의 보전과 구민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책무) ①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구민은 하천 공간의 하천시설물과 친수시설물 등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천 공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하천 공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하천 공간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및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9조(공간이용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하천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하천보전활동 협력)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활동
2. 하천 훼손,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3. 하천환경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4. 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한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관리 및 보전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